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 부터 施行한다.

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 關한 條例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第4條 및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4條(旅費) ① 議員이 會期中 議會의 會議(이하 "本會議"라 한다) 또는 委員會에 出席한 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旅費는 국내여비, 국외여비, 회의참석여비 및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.

第7條(會議參席旅費 등) ① 議員이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參席한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1의 현지고통비 全額으로 하고, 會期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

②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서울特別市管内로出張 할 때에 지급하는 관내출장여비 또한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管内出張時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 부터 施行하되 1992. 1. 1부터 적용한다.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措置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第3條 第1項中 "議政課"를 "議政擔當官"으로, "議事課"를 "議事擔當官"으로 하며, 등조에

第3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사무처장 밑에 공보실을 두며 실장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보한다.

第5條 내지 第10條를 각각 第6條 내지 第11條로 하고,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議會弘報에 關한 基本計劃의 樹立 및 執行
2. 議政活動의 弘報에 關한 事項
3. 出入記者 및 報道에 關한 事項
4. 圖書室의 運營 및 管理에 關한 事項

第6條(중전의 第5條)의 제명 및 본문 중 "議政課"를 "議政擔當官"으로 하고, 동條 第4號 중 "儀典 및 弘報"를 "儀典"으로 하며, 동條 第8號를 삭제한다.

第7條(중전의 第6條)의 題名 및 본문 중 "議事課"를 "議事擔當官"으로 한다.

第4條 관련(별 표)의 一般職 4級 정원란 "13"을 "14"로 하고, 등 定員 內용중 "地方書記官 또는 地方別定職 10"을 "地方書記官 또는 地方別定職 11"로 한다.

一般職 5級 정원란 "9"를 "12"로 하고, 등 정원內용중 "地方行政事務官 8"을 "地方行政事務官 11"로 한다.

一般職 6級 정원란 "15"를 "17"로 하고, 등 정원內용중 "地方行政主事 13"을 "地方行政主事 15"로 한다.

一般職 7級 정원란 "24"를 "26"으로 하고, 등 정원內용중 "地方行政主事補 22"를 "地方行政主事補 24"로 하며, 一般職 소계란 "68"을 "76"으로 한다.

技能職 10等級 "地方事務補助員(조무) 18"을 삭제하고, "地方事務補助員(필기) 4" 및 "地方衛生員(사역) 4"를 신설하며, "地方事務補助員(타자) 8"을 "地方事務補助員(타자) 18"로 하고, 총계란 "144"를 "152"로 한다.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○ 委員長 金寅東 委員 여러분, 수고 많으셨